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차량전면 부착 의무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12.2. 공포, 즉시·'26.6.3.·'26.12.3. 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미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택시 면허기준 충족 소요 기간도 조례로 정한 기간(3개월에서 180일까지)으로 늘리며, 중대교통사고 접수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10제1항제2호 중 “1개월당”을 “1일당”으로, “1천분의 12”를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본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를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로, 같은 호 본문 중 “시·도의 공보”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단서 중 “이내”를 “이내(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제2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 중 제1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 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 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을 말한다.	<삭 제>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 기간 <u>1개월당</u> 연체된 기여금 의 <u>1천분의 12</u> 에 상당하는 금 액 ② (생 략)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1일당</u> ----- -- <u>10만분의 25</u> -----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 <u>2017년 1월 1일</u> 2. 삭 제 3.·4. (생 략) ② (생 략)	----- ----- ----- -----. <삭 제>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30